미

재<mark>송</mark>신 권리 논쟁 : 지상파 방송의 가치와 해외 정책 참고 모델

최광재 SBS IP사업팀 부장

목차

- 1 들어가며
- 2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동시 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료'에 대한 보상
- 3 미국: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과 접근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집중
- 4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안 필요

요약

법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 야 하며, 이를 동시 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료'에 대한 보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으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에 대한 논쟁을 다시금 촉발시켰다. 이에 먼저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관한 주요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재송신 대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콘텐츠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산업 진흥책과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2016년 10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성실 협상 의무 위반 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재송신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 분쟁 사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이상규·송원호, 2017)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 관련 이슈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무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구현과 경쟁 쟁점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경쟁 정책에 기반한 의무 제공 및 재송신 동의 제도 도입 방안과 합리적대가 산정 방식 마련(정영주, 2014)과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입법 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판례 및 입법추진 동향을 검토한 후,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문정국·최성진·김현경, 2016)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회사 경영과 함께 방송을통해 공익을 달성해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의 특성상 정부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정책은여전히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제 기관의 개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이견과 충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이 논쟁을 더욱 풀기 어려운 과제로 만들고 있다.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한 방송사들의 광고매출 하락은 콘텐츠 제공 및 판매, OTT 사업으로 수익 다각화를 강제화하고 있다. 정부도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의 일상을 주도하고 있으

며, 미디어 생태계가 전통적 미디어에서 OTT 등 신유형 미디어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세계 미디어·콘텐츠 시장은 오리지널 및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대형 글로벌 미디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글로벌 사업자의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난관을 극복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산업 진흥책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미흡하며, OTT의 확산으로 미디어 소비가 분산되고 전통 미디어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하청기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시장의 대변화 시대에 규제 중심의 미디어 정책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법체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자율성 및 혁신 제약은 콘텐츠 생태계를 망가트릴 뿐이다.

따라서 미디어 시장의 급변과 재송신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부 딪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국내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과 관련된 정책 원칙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 태이지만, 해외는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연구가 있다(윤성옥, 2018). 미국과 영국은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권력의 균형 유지 그리고 시청자 피해 예방 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을 보여주므로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우리에게 좋 은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글은 먼저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관한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 해외의 지 상파 재송신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향후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를 제안 하고자 한다.

2.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동시 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료'에 대한 보상

법원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오랜 기간에 걸친 수많은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표 1] 참조)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였다. 법원은 공중으로 송신된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없이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방송 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을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재송신료는 동시 재송신의 허락에 따르는 '저작권료'에 해당되는 보상이다.

[표 1] 지상파방송사 vs 유료방송사업자 간 지상파 재송신 관련 주요 소송 정리

사건번호	관할법원	원고	피고	선고일	주요내용
2009키합 3358	서울중앙지법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2009, 12, 31,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인정 저작권침해중지 가처분기각
2009가합 132731	서울중앙지법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외 4사	2010, 9, 8,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인정 신규가입자 동시재송신금지
2010라 109	서울고등법원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2011, 6, 2,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인정 저작권침해중지 가처분인용 신규가입자 동시재송신금지
2010나 97688	서울고등법원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외 4사	2011, 7, 20,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인정 신규가입자 동시재송신금지
2015가합 20199(병합)	울산지방법원	SBS	JCN 울산중앙방송	2015, 9, 3,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책임 부정
2017나 2002999(병합)	서울고등법원	SBS	케이브티브이 광주방송외 7사	2019, 1, 10,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인정

3. 미국: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과 접근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집중

1)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개별 사적 계약을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관리

미국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판결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었는데, 케이블 산업의 시장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를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된 「케이블TV 소비 자 보호 및 경쟁법(이하 '케이블TV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2년 「케이블TV법」은 지상파방송사에게 재송신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했는데, 이 제도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3년 주기로 재송신 동의나 의무 재송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의무 재송신을 선택할 경우 케이블SO는 별도의 보상 없이 재송신을 할 수 있으며, 재송신 동의를 선택할 경우 지상파방송사들과 재송신 대가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경쟁 원칙을 기반으로 재송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시장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수익 창출 차원에서 다채널 방송 사업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정영주, 2014).

미국은 지상파방송사도 케이블SO나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사업자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서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개별 사적 계약을 통해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블랙아웃'이라는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美의회는 「커뮤니케이션법」(47 U.S.C. § 325(b)(3)(c))을 개정하여 지상파방송이 협상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법」의 신의성실 조항 강화, 신호 중단(블랙아웃)에 대한 시청자 고지, 한시적 재송신 유지 제도, 조정제도 도입 등의 개선안 등도 제안(Burton, 2011)되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FCC(미연방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와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유통자) 사이의 협상 실패로 블랙아웃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위성 운영자 및 기타 유료 TV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상파방송사와 '재송신 동의' 계약 체결을 통해 지상파방송사 콘텐츠를 송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제보다는 블랙아웃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재송신 동의 협상에 관한 FCC의 정의 및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재송신 동의 협상에 관한 FCC 정의 및 세부규정〉

관련 법(The Communications Act)은 텔레비전 방송국이 케이블 시스템이나 다른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유통자(MVPD)에게 자신의 방송 신호를 송출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과 케이블 시스템, 그리고 위성 방송사는 '재송신 동의'에 대해 협상을 하며, 이 러한 사적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다른 대가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다. 기존 재전송 동의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계약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MVPD는 협상 중에도 방송국의 방송을 계속 송출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MVPD는 해당 방송국의 방송을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법은 텔레비전 방송국과 MVPD가 재전송 동의를 선의에 의해 협상하도록 요구한다. 위원회는 재전송 동의 협상이 선의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부분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선의의협상 요건으로 구현하였다.

첫째, 위원회는 객관적인 선의의 협상 기준 목록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선의의 협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한다(47 CFR § 76.65(b)(1)). 둘째, 객관적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위원회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재전송 동의 협상을 선의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47 CFR § 76.65(b)(4)). 또한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MVPD 구매 그룹과 대규모 방송국 그룹 간의 재전송 동의 협상을 규제하는 규칙을 채택했다(47 CFR § 76.65(b)(2)).

2) 방송사와 MVPD 등 협상 당사자 간 선의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피해 구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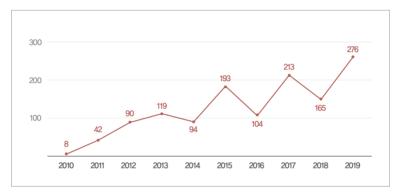
1992년 「케이블TV법」에 의거하여 지상파방송사는 매년 무료로 신호를 강제 송출 하거나 MVPD와 직접 협상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로 재송신 동의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¹⁾ https://www.fcc.gov/media/policy/retransmission-consent

있는데, 대형 방송사는 주로 재전송 협상을 선택하는 반면, 규모가 작은 독립 방송국은 의무 재전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재송신 대가에 대한 협상 도중 블랙아웃과 같은 교착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merican Television Alliance(ATVA)는 2010년 이후 방송사 블랙아웃이 1,25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2010년 8건에서 2019년에는 230건으로 증가하며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고 보고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간 방송사 블랙이웃 발생 횟수?

(단위 : 건)



재송신 블랙아웃 횟수의 증가를 방송사와 케이블사업자 간 재송신 동의 협상 난이 도가 높아지고 격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지만, 블랙아웃 횟수의 증가와 재송신 협상 난이도 간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협상의 난이도가 증가했다기보 다는 과거보다 재송신 동의를 선택하는 방송사 절대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블랙아웃 횟수 도 증가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9

²⁾ https://www.forbes.com/sites/bradadgate/2019/11/12/tv-station-blackouts-are-accelerating-heres-why/

재송신 대가 협상 시간이 길어질수록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하지만 블랙아웃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나 원인을 정확히는 알기 어렵다는 연구결과(Park, Frieden et al, 2020)로 보아 블랙아웃은 방송사와 케이블사업자 간 협상 실패로 나온 결과물일뿐특정 사업자의 책임 또는 책임 비중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FCC는 구체적인 대가를 제안하거나, 대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 등을 제시하기보다는 방송사와 MVPD 등 협상 당사자들에게 선의의 협상 요구사항에 대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블랙아웃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26 FCC Rcd 2718 (2011))은 아래와 같다.³

〈재전송 동의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 개정, 2011〉

법에 의해 예상된 시장 기반 협상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협상 당사자들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전송 동의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진행한다. 협상 당사자들에게 선의의 협상 요구 사항에 대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 우리 규칙 제76 65(b)(1) 조항에서 명백한 위반의 추가 예시를 명시하고
- 제76 65(b)(2) 조항의 전체 상황 기준을 더 명확히 규정한다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통보 개선을 위해

- 케이블 운영자뿐만 아니라 비케이블 MVPD와 방송사에도 우리의 통보 규칙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재전송 동의 계약 만료 30일 전에 갱신 또는 연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신호가 최종적으로 삭제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방송사의 신호 삭제 가능성에 대해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 비케이블 MVPD에게도 케이블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시청률 조사기간 동안 지역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을 삭제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위원회의 네트워크 비중복 및 신디케이트 독점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MVPD가 네트워크 프로그 래밍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³⁾ https://www.fcc.gov/document/amendment-commissions-rules-related-retransmission-consent-0

4.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안 필요

1) 지상파 재송신료는 수많은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의 결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상파 재송신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도 지상파 재송신 논란 초기, 케이블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공연권 개념이 재송신에 포함되면서 케이블TV가 지상파의 동의 없이 재송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2014년 에어리오(Aereo)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저작권법의 전송 조항이 다시논란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항소법원에서 에어리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은 에어리오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최종 결정하면서 지상파 재송신이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윤성옥, 2017). 이처럼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수많은 저작권침해 청구 소송의 결과의 산물이다.

국내에서도 2008년 이전까지는 지상파방송사는 재송신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지상파방송사는 당연한 권리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도적인 해태로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무단 재송신 문제가 반복되면서 소송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법원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파방송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그 대가는 통상 지급해왔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보내는 방송 신호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인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규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해묵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규제 중심에서 콘텐츠 진흥으로 정책 전화

세계 미디어·콘텐츠 시장은 오리지널 및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대형 글로벌 미디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글로벌 미디어의 시장 잠식이 본격화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난관을 극복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산업 진흥책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OTT의 확산으로 미디어 소비가 분산되고 전통 미디어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글로벌 OTT의 하청기지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가시적인 정책적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논의가 아닌 지상파 재송신 대가에 관한 분쟁이나 논란으로 불필요한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 환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뿐이다. 경직된 법체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자율성 및 혁신 제약이라는 악순환만 야기할 뿐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2023년 말에 발표된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콘텐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전히 진흥보다는 규제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료방송간 콘텐츠 사용료 논의가 지상파 재송신료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 방식이 아니며,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2022년 7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립 (국정 6),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국정 27),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조성(국정 59),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국정 64) 등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미디어에 대한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사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이용 사업자, 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시간 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의 일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디어 생태계가 전통적 미디어에서 OTT 등 신유형 미디어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 통신 미디어 법제의 패러다임 개편, 방송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 규제 완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및 신사업 활성화 지원,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확립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대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에서도 TV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가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즉 사업자 간 자율 협상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대가 수준을 통제하는 것은 법원 판례로 인정받은 방송사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프리미엄 콘텐츠의 중요성과 산업 간 경계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상파방송사의 궁극적인 역할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콘텐츠 제 작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냉정하게 현재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의 보유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고품질 콘텐츠가 전문적인 생산 체제를 갖춘 지상파 방송사에서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방송 및 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심하다.

참고문헌

문정국, 최성진, 김현경 (2016).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입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7(1), 67~112,

윤성옥 (2017). "지상파 재송신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법원 판결의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방송과커뮤니케이션18(1): 79~116,

윤성옥 (2018). "지상파 재송신 관련 법률 적용과 정책 방향 :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보32(2) : 36~64,

이상규, 송원호. (2017). 지상파 재송신료의 합리적 산정방안 및 결과. 정보통신정책연구, 24(1), 1~40.

정영주 (2014).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현실적 쟁점 연구—보편적 서비스 구현과 경쟁 쟁점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51(2): 142~179.

Burton, M. (2011), "Reforming retransmission consent," Fed, Comm, LJ64: 617,

Park, E.-A., et al. (2020). "Factors Affecting the Frequency and Length of Blackouts in Retransmission Consent Negotiations: A Quantitativ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n Media Management 22(3-4): 117~133.